

대한럭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14. 7. 24.
개정	2016. 4. 28.
개정	2017. 9. 5.
개정	2018. 6. 26.
개정	2020. 1. 29.
개정	2023. 2. 6.
개정	2025. 5. 23.

제1 장 총 칙

제 1 조(근거 및 명칭) 대한럭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23. 2. 6.>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심판위원회 및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규정과 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회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 2. 6.>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심판판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2. 6.>

[제목 및 전문개정 2023. 2. 6.]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 5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7명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제26조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5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2. 6.>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6.>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대회 심판부 운영과 임무 부여는 「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과 「대회 요강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6.>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2. 6.>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2. 6.>

제13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 31.]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 하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 가. 1급
 - 나. 2급
 - 다. 3급
 - 라. 기타
2. 국내심판
 - 가. 1급
 - 나. 2급
 - 다. 3급
 - 라. 기타

제15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8조와 제25조 및 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심판은 경기의 레프리(주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8조 및 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제37조에 따른다.<개정 2023. 2. 6.>

제16조(정보 제공) ① 협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 경력, 심판 경력, 교육 이수 경력, 상벌 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협회 규정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제17조(심판아카데미 운영) ① 체육회는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체육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 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단체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체육회 주관 교육은 심판양성교육과 심판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 과정의 교육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양성교육은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심판을 대상으로 별표와 같이 8개 영역 14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심판심화교육은 심판양성교육 이수 심판 중 종목 유형별로 상임심판,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심판이사, 심판위원회 위원, 10년 이상 활동심판 또는 최근 2년간 최다 활동 심판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각 종목 유형별로 전문 강의 및 토론 중심의 교육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3.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4. 체육회는 교육 참가 심판을 대상으로 심판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체육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⑥ 체육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8조(협회자체 교육실시)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19조(심판평가) ①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상임심판, 종목단체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회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협회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0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

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심판은 경기의 레프리(주심)로 한정한다. <개정 2023. 2. 6.>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심판배정) ① 협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3.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제22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협회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협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 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명백한 편파판정
2. 득점상황에 대한 오심. 경기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한다.
3.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불공정한 판정

⑥ 심판판정의 이의제기 절차 및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단체는 대회종료 후 3일 내에 협회에 협회 이의제기 양식을 학교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22조 5항 각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공문으로 이의제기접수 후 30일 이내에 회신한다.

<개정 2023. 2. 6.>

⑦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탁금은 아래와 같다.

1.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탁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의제기가 접수된다.
2.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부한 공탁금은 전액 반환한다.
3. 이의제기가 기각될 경우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4. 각 종별의 공탁금은 아래와 같다.

- 15세이하부 20만원, 18세이하부 30만원, 대학부, 일반부 50만원

<신설 2025. 5. 23.>

제23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2. 6.>

제6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4조(심판의 상벌) ① 제22조 5항 각 호에 따라 명백한 오심 또는 편파판정으로 확인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등급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일반적인 판정 미숙에 대해서는 심판위원회에서 교육, 배정제한 등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제25조(심판의 포상 등) ① 협회는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심판매뉴얼)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